

목 차

정 관	1
-----------	---

정 관

제1장 총칙

제1조 (상호)

이 회사는 고려제강주식회사라 한다. 영문으로는 KISWIRE LTD. (약호 KISWIRE)라 표기한다.

제2조 (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철업
2. 강선삭제조업 및 신선업
3. 무역업
4. 위탁판매업
5. 부동산매매임대업
6. 기계검사, 안전점검 및 관련 서비스업
7. 산업안전장치 판매업
8. 체육시설업
9. 용역업
10. 전 각호에 부합되는 사업 및 투자

제3조 (소재지)

1. 이 회사는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둔다.
2. 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업소 및 현지 법인을 둘 수 있다.

제4조 (광고방법)

이 회사의 광고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단,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전항의 신문에 게재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경향신문에 게재한다.

제2장 주식 및 사채

제5조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일주의 금액)

-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삼천만주로 한다.
- ② 주식 일주의 금액은 일천원으로 한다.

제6조

1. (주식의 종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2.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비누적적, 비참가적이며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하고 그 수는 이백만주로 한다.
- ②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보통주식의 배당보다 액면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 1%를 금전으로 더 배당한다.
- ③ 제 ②항의 우선주식에 대한 배당은 보통주식에 대한 배당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선주식에 대하여도 배당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우선주식에 대하여 당해사업년도 이익에서 소정의 배당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의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제7조

1. (신주 인수권)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주주가 신주 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 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에 결의로 정한다.

2. (시가발행)

이 회사는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시가로 발행할 수 있으며, 그 발행가액은 이사회에 결의로 정한다.

이 경우 이사회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가로 발행하는 신주식을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3. (동등배당)

회사는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 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제8조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9조 (명의개서대리인)

1. 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2.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에 결의로 정한다.

3.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사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4.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이 정한 관련 업무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주주명부 작성·비치)

1. 이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명세를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2. 이 회사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제 10조2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1. 이 회사는 매결산기 최종일의 익일부터 그 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와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를 정지한다.

2. 이 회사는 매결산기 최종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로 하여금 그 권리를 행사하게 한다.

3.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에 결의에 의하여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한 후 3월을 초과하지 않는 일정한 기간에 걸쳐 명의개서 등을 정지하거나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의개서의 정지와 기준일을 함께 정할 수 있다.

제11조 (전환사채의 발행)

1. 이 회사는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4.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회사는 전환 전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이자에 대하여만 이자를 지급한다.

제12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1. 이 회사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3.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제12조의2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다만, 사채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상장사채등을 제외하고는 전자등록을하지 않을 수 있다.

제3장 주주총회

제13조 (총회의 소집)

1. 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정기주주총회는 매 결산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소집한다.
2.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3.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주주총회소집 통지는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일간지(신문)에 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서면에 의한 소집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4.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의 정관에 부합하고 이사회의 결의로서 정기주주총회의 소집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제14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15조 (의장)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위에 따른다.

제16조 (의결권)

각 주주의 의결권은 소유주식 1주에 대하여 1개로 한다.

제17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제한)

이 회사, 이 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18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리인은 총회개최 전에 그 대리인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의결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20조 (총회의 질서유지)

1. 주주총회의 의장은 그 주주총회장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행을 감행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언행권의 정지, 취소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을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여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1조 (의사록)

주주총회 의사진행에 관하여는 그 경과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입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4장 이사, 이사회 및 감사

제22조 (선임)

1. 이 회사에 이사는 3명 이상으로 두고 이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2.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3.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대표이사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약간명을 선임할 수 있다.
4.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하지 아니한다.

제23조 (이사의 임기)

1.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24조 (결원의 보선)

1. 이사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보궐선거를 행할 수 있다. 단, 법정원수에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25조 (이사의 직무)

이사회는 이사로 조직되며 상법 또는 정관에 정한 주주총회의 의결사항을 제외한 이 회사의 업무상의 방침, 제규정 및 기타 중요사항을 의결하며 의장은 대표이사가 정한다.

제26조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

1. 이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2.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상법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7조 (이사회)

1. 대표이사는 이 회사를 대표하며 회사의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2.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 회사의 일반업무를 분장하며 대표이사 유고시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7조의2 (이사의 보고의무)

1.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1.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2.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1일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29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1.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 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2. 이사회 의장은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 소집권자로 한다.
3.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4.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30조 (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에 비치한다.

제30조의2 (이사회내 위원회)

1. 이 회사는 이사회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둔다
 - ① 감사위원회
2.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제30조의3 (감사위원회의 구성)

1. 이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30조2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2.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3.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사외이사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 10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4.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5.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이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6. 감사위원회 위원은 상법 제 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 4항 단서에 따른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
7.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8.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9.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이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1조 (감사위원회의 직무 등)

1. 감사위원회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2.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3. 제2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4.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5.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경영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6.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
7.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7항 외에 관련 법령 또는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32조 (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감사록에 기재하고 그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33조 (고문)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고문 약간명을 추대할 수 있다.

제34조 (임원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제35조 (임원의 퇴직금)

이사의 퇴직금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는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제5장 계산

제36조 (사업년도)

이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7조 (재무제표의 작성, 비치)

1.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를 받아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대차대조표

② 손익계산서

③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단, 각 항의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2.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 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사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불구하고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① 제1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때

②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5. 제4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대표이사는 제1항의 각 서류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 대표이사는 제1항 각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 또는 제4항에 의한 이사회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 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38조 (이익금의 처분)

이 회사는 매사업년도 이익금(잔여이익잉여금 포함)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상법상의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6. 차기이월이익잉여금

제39조 (이익배당금)

1.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식에 의한 배당은 이익배당 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3.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40조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1.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2.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제6장 부칙

1. 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서 영업권한 및 경영상 중요한 세칙내규를 정할 수 있다.
2. 이 정관은 2007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3. 이 정관은 2012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4. 이 정관은 2013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5. 이 정관은 2020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6. 이 정관은 2021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